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7일
신고번호 제 호				
신청인	상 호 (사 업 장 명 칭)			
	성 명 (대 표 자)		사 업 자 등 록 번 호 (법 인 등 록 번 호)	
	주 소 (휴대전화번호:)			
	사 업 장 소 재 지 (전화번호:)			
	업 종 (주 생산품:)			

[]배출시설, []방지시설 부적정 운영(예정)일	
[]배출시설, []방지시설 개선 완료(예정)일	
배출시설명 및 방지시설명	
[]배출시설, []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개선계획	* 개선사유, 개선기간, 개선내용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.
개선기간 중 관리계획	예상 악취배출농도(지정악취, 복합악취)
	악취저감 및 관리계획
개선완료 후 [] 배출시설, [] 방지시설 운영·관리계획	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대도시의 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1.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3. 공법 등의 개선으로 악취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계획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현지확인 (필요시) → 결재 → 통보

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대도시, 시·군·구
(약취배출시설 담당부서)